

대학원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졸업요건 내규집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와 (주)LG디스플레이(이하 “산업체”라 한다)의 협약으로 설치된 일반대학원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이하 “본 계약학과”라 한다)의 교육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본 계약학과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Department of Integrated Display Engineering)라 부른다.

제3조(교육목표) 본 계약학과는 디스플레이 유관분야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4조(수여학위) 본 계약학과는 석사(M.S.), 박사(Ph.D.)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학생선발) 본 계약학과는 매학년도 전기 및 후기 전형에서 학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6조(입학전형) 본 계약학과의 입학전형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서류평가, 구술평가 및 산업체에 의한 평가로 한다.

제7조(선발) ① 서류평가는 학업 및 연구계획과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성적 등에 주안점을 두고, 구술평가는 전공에 대한 지식과 적성 및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을 주로 평가한다.

② 산업체에서 학생 선발을 위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일반대학원 입학전형 일정에 맞추어야 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8조(등록) ① 산업체는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처음 4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처음 6학기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휴학) ① 한 학기 수업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결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생 휴학의 총 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과정은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복무 기간, 출산 및 육아기간(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제10조(복학) 휴학자로서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정하여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학과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교과목 구성, 수업 및 학점

제11조(교과목 구성) 본 계약학과의 교과목은 개설한 과목들 중에서 강좌내용을 고려하여 변경, 통합, 신설, 폐지 등 재조정하도록 한다.

제12조(교과목 신설)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신규교과목 개설제안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교과목 폐지) 2년 동안 한번도 개설되지 않았거나, 개설할 계획이 없는 교과목은 폐지할 수 있다.

제14조(교과목 운영) ① 석/박사과정은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1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② 통합과정은 전공필수 18학점, 전공선택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제15조(수강과목) 학생의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고 학생은 학과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와의 상담을 거쳐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16조(수료 및 이수학점) ①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하고,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② 학생은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규정에 따라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③ 타 학과에서 개설된 대학원 과목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전공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17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 최대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연구등록학기를 제외하고, 학생은 학기당 최소 4과목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제18조(학점등급) 본 학과의 학점등급은 A+, A0, A-, B+, B0, B-, C+, C0, C-, F, W(Withdraw), P/NP(Pass/NonPass)로 구분한다.

① 등급 / 평점표 현황

등급	평점
A+	4.3
A0	4.0
A-	3.7
B+	3.3
B0	3.0
B-	2.7
C+	2.3
C0	2.0
C-	1.7
F	-

제19조(이수학점 인정) ①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율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이상 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1.7)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②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은 3.0(4.3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학사경고) 매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며 학사경고를 총 2회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제5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1조(종합시험 시기) 종합시험은 학기 중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일시는 시험일 2주전까지 학과 주임교수가 공고한다.

제22조(종합시험 시행)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석사 학위논문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획 및 진행과정 보고서를 제출 후, 구두 발표 평가를 받는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박사 학위논문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획 및 진행과정 보고서를 제출 후, 구두 발표 평가를 받는다.

제23조(종합시험 합격)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며,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학기에 재시험을 볼 수 있다.

제2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대학원이 인정하는 TOEIC, TOEFL, TEPS 점수로,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TOEIC 700점 이상, TOEFL(PBT:530점, CBT:200점, IBT:75점) 이상, TEPS 570점 이상을 받으면 영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학업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생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해외에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해외에서 2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자로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연세대 영어 강의 수강 및 외국어학당 수업 수료 (C+ 학점 이상)

제6장 학위논문

제25조(논문지도교수 배정) ① 본 학과의 학생은 1학기가 끝나기 이전에 지도교수를 선택하여야 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도교수는 본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대학 내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① 종합시험(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과 주임교수로부터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지도교수로부터 연구지도 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학위논문 양식 및 규격)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일반대학원 학칙에 의거하여 논문의 영문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문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하에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의 규격은 일반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3인의 학과교수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과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학교 전임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및 논문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5인의 학과교수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과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학교 전임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및 논문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학과 교수로 정한다.

④ 심사위원 자격요건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제29조(학위논문 예비심사) ① 예비심사의 일시는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예비심사일 3주 전까지 예비논문을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이 지연될 경우 예비심사일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③ 예비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학위논문 본심사) ① 학생은 본심사 1주 전까지 【학위논문 제출자격 확인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교수는 이를 검토한 후 모든 자격조건이 만족된 경우에만 논문제출 자격이 있음을 통보한다.

② 본심사의 일시는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예비심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서면으로 각 심사 위원들에게 본심사 2주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심사는 취소되며, 심사일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④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학위논문 재심사) ① 학위논문 본심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 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제32조(학위논문 제출 시한) ①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33조(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본 학과의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 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이수한 자
5.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지도받은 자
6.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7. 주임교수가 인정한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발표한 자. 단, 석사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학생이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이면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동일논문 또는 발표를 두 학생의 제출자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본 학과의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박사과정은 30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이수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5.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지도받은 자
6.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주임교수가 인정한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한 자. 단, 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 학생이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이면서 지도교수가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동일논문 또는 발표를 두 학생의 제출자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조직

제35조(구성) 본 학과에는 학과주임교수, 학과교수, 참여기업, 등록 학생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대내외 관련 주요 인사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둔다.

제36조(주임교수 임명) 주임교수 임명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천하며, 주임교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 학과의 주임교수가 위원장이 되고,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학과의 모든 운영 및 행정업무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과 주임교수가 책임지고 수행하며,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학기당 1회 이상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의 소집이 불필요할 경우

사전 통보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토의 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신설, 수정 및 폐지
3. 학과 교과목의 구성, 운영, 신설,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과 교과목 이수 및 수업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점 교환 및 학점 이전에 관한 사항
6. 석·박사 종합시험, 학위논문심사 및 졸업 자격에 관한 사항
7. 대학원생 장학관련 업무
8. 기타 사항

제8장 장학금

제39조(장학금) 학업이 성적이 우수하고 학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재학 기간동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준용

제40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내규에 준용한다.